

데이터로 보는 고령자 고용

전문경력관 김성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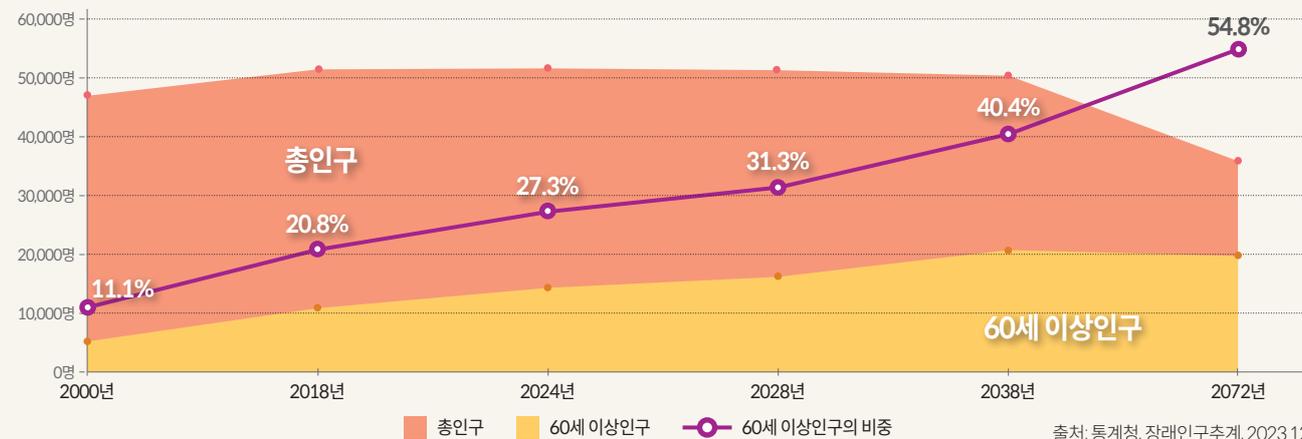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고령자의 경제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용과 관련한 국내·외 데이터를 살펴보고, 고령자 고용 확대 및 정년 연장을 위한 입법적 대응을 소개한다.

주제어 ▶ 고령자, 고령자 고용, 고령자 취업

60세 이상 고령인구 추계 및 잠재성장률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7.3%에 해당하는 1,414만 9천여 명이며, 2038년을 기점으로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령인구는 점차 증가하여 2072년에는 54.8%에 이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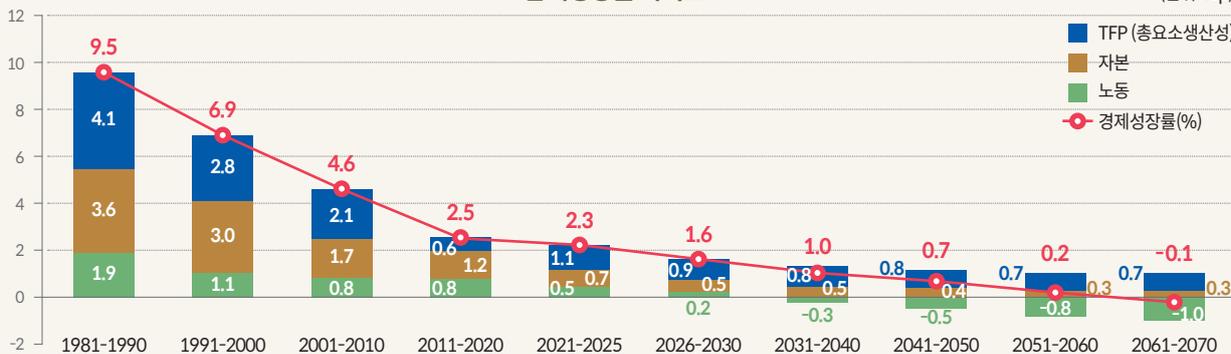
(단위: 천명)



한국경제연구원은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노동공급이 감소되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노동공급의 감소이며,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잠재성장률 기여도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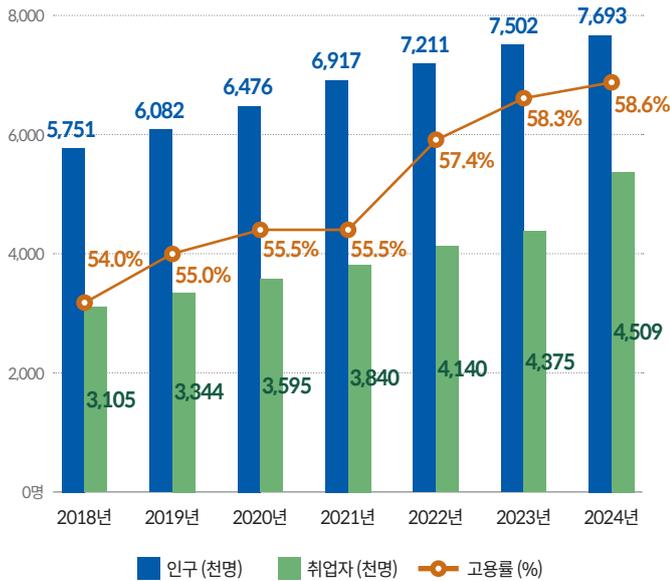


고령층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2024년 기준 60~69세 인구는 769만 3천 명이며, 이 중 취업자는 450만 9천 명이었다. 고용률은 58.6%로 2018년 대비 4.6% 상승하였다. 20~59세 인구는 2,919만 2천 명이며, 이 중 취업자는 2,194만 3천 명으로 고용률은 2018년에 비해 2.5% 상승한 75.2%였다.

60~69세 인구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단위: 천명)



20~59세 인구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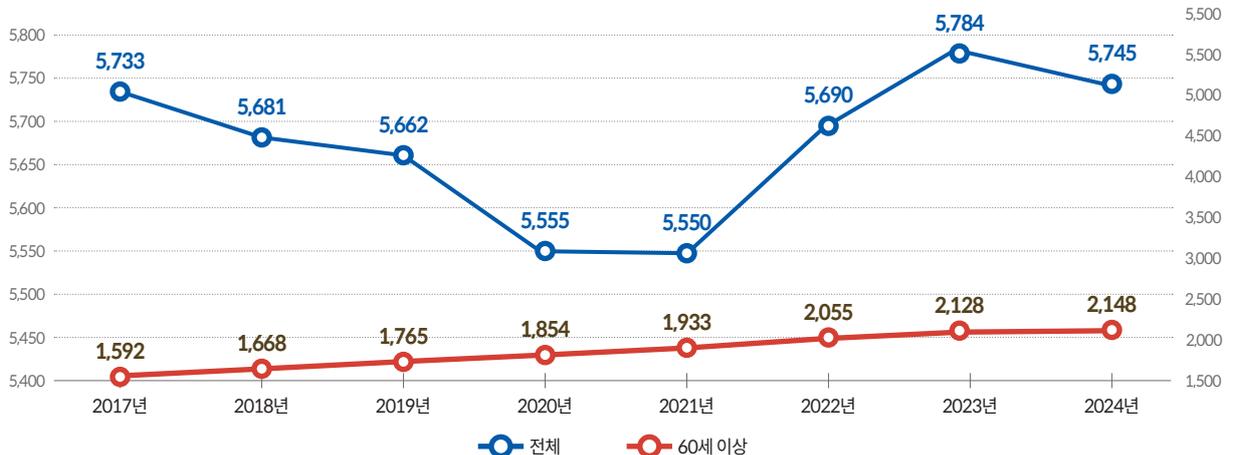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고령자 자영업자 추이

자영업자 추이를 살펴보면 15세 이상 전체 자영업자 수는 2017년 573만 3천 명에서 2024년 574만 5천 명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2017년 159만 2천 명에서 2024년 214만 8천 명으로 34.9% 증가했다. 이는 은퇴 이후 재취업이 안되는 고령자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창업 전선에 뛰어들어온 것으로 풀이된다.¹

15세 이상 전체 자영업자 및 고령자 자영업자 추이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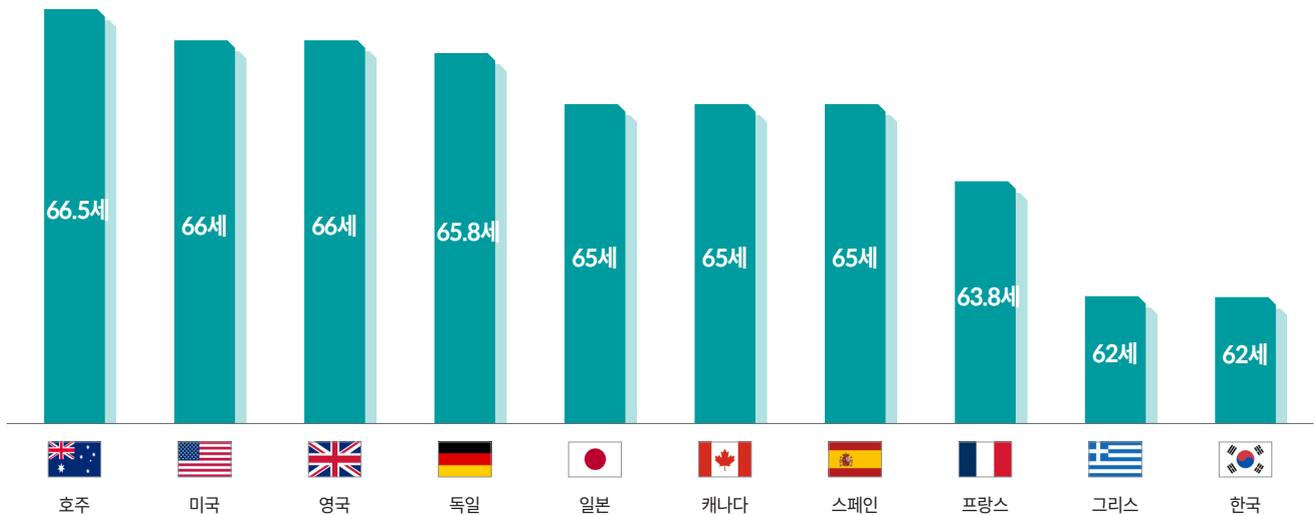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2025.

1. “고령자 재취업 어려워, 자영업 선택”...60대 이상 자영업자 비율 역대 최대, 문화일보, 2024.12.14.
고령자 노후실태 및 취업현황 분석,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2022.11.2.

OECD 국가별 표준은퇴연령

2022년 기준 OECD 각 국가별 표준은퇴연령²은 호주는 66.5세, 미국과 영국은 66세, 독일은 65.8세, 일본, 캐나다 등은 65세로 조사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62세이다. 우리나라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호주, 미국, 영국 등은 정년제를 폐지하였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OECD 주요국의 표준은퇴연령(2022년)



출처: Pensions at a Glance 2023, OECD AND G20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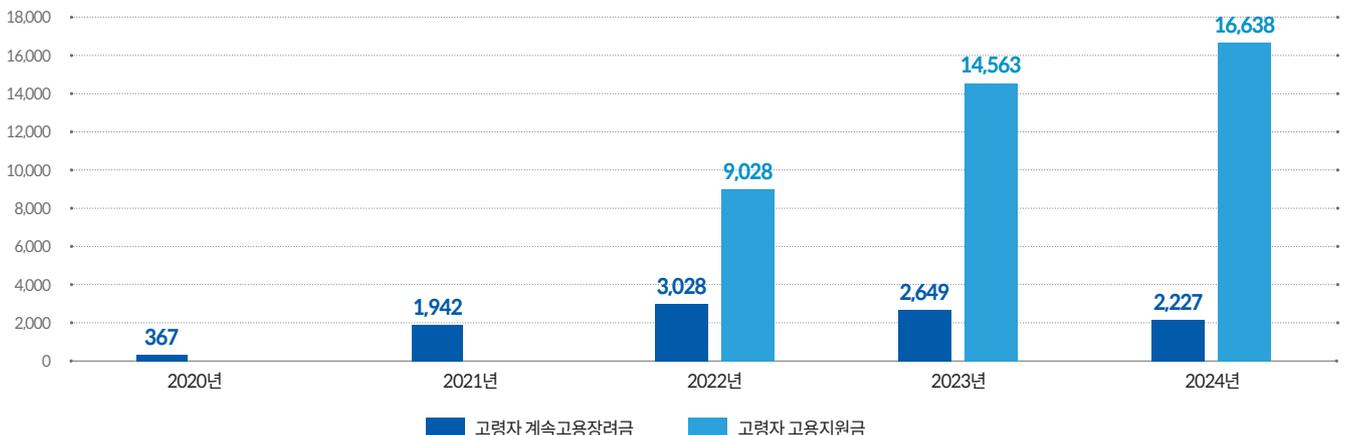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우리나라는 「고용보험법」의 고령자등 고용촉진 지원 규정(법 제23조)을 근거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시행령 제28조의4)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시행령 제28조의5)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해마다 2천 개소 이상의 기업이 지원받고 있으며,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고령자 고용지원금’ 활용 기업도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기준 1만 6천 개소 이상 지원받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용지원금 활용 기업현황

(단위: 개소)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2025.

2. 22세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을 기준으로, 제한 없이 완전한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나이를 의미하며, OECD 국가들은 연금수급 연령을 실제 은퇴연령으로 설정하여 고령근로자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2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정년)

-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 2025. 2. 23.] [법률 제20519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관련법률안 (2025년 3월 20일 기준)

법률안명	대표발의	주요내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2201913] (2024.07.18.)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함
	김위상의원[2202780] (2024.08.13.)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년 이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고용할 것을 사업주에게 촉구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재고용을 의무화 함
	박홍배의원[2202981] (2024.08.20.)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적 퇴직연령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무연금, 무소득으로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의원[2203342] (2024.08.29.)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서영교의원[2203462] (2024.08.30.)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박해철의원[2204561] (2024.10.4.)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함
	한정애의원[2205705] (2024.11.19.)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김주영의원[2205776] (2024.11.21.)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업자가 고령자를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둠
	이수진의원[2205853] (2024.11.25.)	정년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사업 및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에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이용우의원[2208051] (2025.02.11.)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함, 정년연장에 따른 필요조치에 관하여 현행법에 ‘임금체계 개편’만 명시되어 있던 규정을 ‘필요한 조치 등’으로 확대함.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 장려금 지급 등 국가의 지원의무를 규정함
김위상의원[2208860] (2025.03.12.)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도록 하여 고용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고용시장 양극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Data & Law

국회도서관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발간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문의 입법과통계서비스(<https://argos.nanet.go.kr/lawstat>), 의회법률정보포털(<https://lnp.nanet.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용문의 국내법률정보과(02-6788-4764)

발간등록번호 31-9720116-001998-14 | ISSN 2982-6241

